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재심청구 및
심사·결정 통지 기한 정비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6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3
2. 「행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재심청구 및 심사·결정 통지 기한 정비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
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
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¹⁾

그러나, 각 개별법상 일부 규정은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각 개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행정기본법」 제36조²⁾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인 30일보다 짧게 정하고

1)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있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각각 14일, 10일보다 길게 정하여 국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발생한다면, 「행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³⁾

한편,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5조⁴⁾에서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36조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 ⑦ (생략)

3)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2021. 12.), p. 367 참고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필요하다. 종래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었고,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

제36조는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에 제정 취지가 있다. 다만,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략) 제36조는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개별 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36조가 적용되어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일반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임.⁵⁾

다만, 개별법의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과 다르게 청구기간 등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로, 이의신청제도 관련 각 개별법이 청구기간, 처리기한·연장기한 및 청구기간 기산점 등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총 19건⁶⁾ 발의되어 있음.

5)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2021. 12.), p. 374 참고

6) 자료: 의안정보시스템(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5. 3. 20.)

연번	의안명	소관위원회
1	[22091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	[22091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3	[220916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2091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	[220916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22091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220917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8	[2209201]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220917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220917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1	[22092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22091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3	[2209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22091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220918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220919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22092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8	[22091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220919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행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재심청구 및 심사·결정 통지 기한 정비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을 현행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에서 ‘퇴학 조치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통보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 ----- ----- -----통지 받은-----30일----- ----- ----- ----- -----.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14일----- -----통지하 여야----- 다만, 부득이한 사유 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

③・④ (생 략)	<u>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생에 대한 징계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을 두고 있는데, 퇴학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⁷⁾

7)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8)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퇴학처분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23. 6. 27.>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8)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징계조정위원회⁹⁾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심의·의결기관임.

참고로,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퇴학’이 가능한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있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지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개별법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연장)기한을 길게 정한다면 국민이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

9)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⑨ (생략)

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됨.

더욱이 학생에게 있어 퇴학 조치는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 연장 및 재심청구 심사·결정 및 통지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도 학업중단학생 현황】

(기간: 2023. 3. 1.~2024. 2. 29., 대상: 고등학생, 단위: 명)

구분		합계	자 퇴					퇴 학		기타 ¹⁾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총 계		25,915	1,639	165	4,698	2,429	16,657	50	205	72
학 년 별	1학년	14,904	1,001	99	2,831	1,546	9,272	20	91	44
	2학년	9,531	535	46	1,487	787	6,584	20	60	12
	3학년	1,480	103	20	380	96	801	10	54	16
시 도 별	서 울	4,128	310	22	579	716	2,474	1	13	13
	부 산	1,353	87	4	261	109	875	-	10	7
	대 구	1,172	79	13	189	76	808	-	7	0
	인 천	1,434	77	9	221	147	957	1	20	2
	광 주	1,007	94	6	262	51	578	-	12	4
	대 전	784	62	3	106	85	519	2	6	1
	울 산	429	25	3	65	30	292	4	10	0
	세 종	290	26	3	24	45	185	1	4	2
	경 기	7,646	410	29	921	786	5,422	12	46	20
	강 원	807	40	4	247	45	447	1	23	0
	충 북	833	40	6	222	36	514	9	2	4
	충 남	1,171	62	8	295	69	726	5	4	2
	전 북	939	70	4	249	49	552	3	6	6
	전 남	895	69	19	310	28	452	3	11	3
	경 북	1,271	70	21	380	52	732	1	13	2
	경 남	1,428	100	11	335	74	885	5	14	4
	제 주	328	18	-	32	31	239	2	4	2

주1: 제적, 유예, 면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의 관리, 단, 유예, 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24 교육통계연보, 5-8.학업중단학생현황, p. 252-253, 편집 재구성)

참고로, 2023년도 기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 중단 학생 총 25,915명 중 학칙위반에 따른 징계로 퇴학을 한 학생은 205명(0.79%)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91명(44.4%), 2학년 60명(29.3%), 3학년 54명(26.3%) 수준임.

다만, 징계조정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요청받은 경우, 심사를 위한 자료를 해당 학교에 요청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한 후 위원회의 심사·결정 절차를 통해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사와 관련하여,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함.¹⁰⁾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퇴학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학적유지기간 동안 평가 처리 등 학사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등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기본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퇴학처분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 외에 다른 학생들의

10) (2024년도 일부개정)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pp. 72-77 참고

학습권 침해로 인한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¹¹⁾은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 연장은 퇴학 처분 후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의 진로상담,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을 해야 하는 학교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서울)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 및 통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울산, 경북)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92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등 퇴학 처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위해 학교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때문에 불복에 대한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날 경우 학교 업무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 퇴학처분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나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통지의 주체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 점을 고려할 때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23~'24 재심청구~결정통지 소요기간: 평균 23.5일

(경상북도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 단위학교 자료 제출 → 안건 자료 작성 → 위원에게 안건 통지 → 자료 검토 → 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정 → 결정통지서 작성·발송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현행 30일도 여유롭지 못함. ※ '23~'24 재심청구~결정통지 소요기간: 평균 23.3일